선박안전법 시행령

[시행 2024, 11, 12.] [대통령령 제34988호, 2024, 11, 12., 타법개정]



해양수산부(해사산업기술과) 044-200-5833. 5831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선박안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적용제외 선박) ① 「선박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" 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7. 6., 2018. 9. 4., 2020. 7. 28., 2021. 1. 5., 2023. 4. 11., 2023. 6. 7.>
 - 1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(이하 "선박검사증서"라 한다)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(이하 "계선"이라 한다)한 경우 그 선박
 - 2.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
 - 3.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,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「선박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.
 - 가.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(平水)구역[호소(湖沼: 호수와 늪)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(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「어촌・어항법」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)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.
 - 1) 「항만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(이하 "항만건설작업선"이라 한다)
 - 2) 압항부선(押航艀船: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3)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
 - 4)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
 - 나.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(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운항하는 선박,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박은 제외한다.
 - 1) 항만건설작업선
 - 2) 압항부선
 - 3)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
 - 4)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. 삭제 <2015. 7. 6.>
 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이 조에서 "선박소유자등"이라 한다)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③ 제1항제3호가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 조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18. 9. 4., 2023. 4. 11.>
- 제3조(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)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,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, 법 제18조제9항, 법 제20조제3항, 법 제22조,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 지,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,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, 법 제80조,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,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. <개정 2010. 11. 24., 2018. 4. 30.>
- 제4조(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)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: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.
 - 2.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: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3.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: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4.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: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

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제4조의2(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) 법 제14조제4항에서 "측정장비,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 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30.]

- 제5조(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으로 한다.
 -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선박에 대 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 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 - 1. 여객선안전검사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: 1년
 - 2.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: 5년
 -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(起算)한다. <개정 2008, 2. 29., 2013. 3. 23., 2015. 7. 6.>
 - 1.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(이하 "정기검사"라 한다)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
 - 2.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
 - 3.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 급받은 날
 - 4.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, 다만, 계선(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)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 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박검사증서"는 "국제협약검사증서"로 본다.
- 제6조(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5. 7. 6.>
 - 1.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: 3개월 이내
 - 2.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: 5개월 이내
 - 3.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(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)에 사용되는 경우(국제협 약검사증서로 한정 한다): 1개월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7조(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(이하"형식승인시험" 이라 한다)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
 - 2.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 는 자가 아닐 것
 - 3.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 · 검사기관에 해당할 것
 - 4.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(「국가표준기본법」 또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정·교정 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)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
-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, 3, 23.>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, 29, 2013. 3. 23.>

제8조 삭제 <2010. 11. 24.>

제9조 삭제 <2010. 11. 24.>

- 제10조(검사등업무의 대행 등)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 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(이하"선급법인"이라 한다)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30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18. 4. 30.>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11조(대행업무의 취소 등)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8. 4. 30.>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, 2, 29... 2013. 3. 23.>

제12조 삭제 <2018. 4. 30.>

- 제13조(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)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 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2, 29., 2013, 3, 23.>
 -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
 - 3.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
 - 4.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6.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·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, 2, 29., 2013. 3. 23.>
- 제14조(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)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다 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
 - 3.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
 - 4.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6.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·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15조(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)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8. 4. 30.>

- 1. 공단 : 3억원
- 2. 선급법인 : 50억원
- 3.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: 3억원
- 4.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: 3억원
- 제16조(항만국통제의 시행)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"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. <개정 2018. 4. 30.>
 - 1.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
 - 2. 「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」
 - 3. 「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」
 - 4. 「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」
 - 5. 「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」
 - 6. 「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」
 - 7. 「선원의 훈련·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」
 - ② 제1항제5호의 「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」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(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)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. <개정 2021. 1. 5.>
- 제17조(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 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, 2. 29., 2013, 3, 23.>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·선박소유자·선급법인 또는 선박 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18조(공표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(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)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30., 2023. 4. 11.>
 - 1. 공단, 선급법인,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(이하 "두께측정지정업체"라 한다), 컨테이너검정 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
 - 2.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
 - 3. 「선주상호보험조합법」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
 -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선박명(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)
 - 2. 총톤수
 - 3.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
 - 4. 선박소유자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,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)
 - 5.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, 항만명,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19조(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·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·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, 3, 23.>
- 제20조(항해정지 등의 조치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·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·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

2008. 2. 29., 2013. 3. 23.>

- 제21조(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(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8. 2. 29.. 2010. 11. 24., 2013. 3. 23., 2015. 7. 6., 2018. 4. 30., 2023. 6. 20.>
 - 1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{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(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 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)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}
 - 1의2.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,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 와 그 고시
 - 2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
 - 3.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, 같은 조 제5항 및 제7 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
 - 3의2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
 - 4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,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
 - 4의2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·교환·폐기·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
 - 5. 법 제20조제1항・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,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 • 감독
 - 6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
 - 7.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,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 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
 - 7의2.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
 - 7의3.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합격 취소
 - 7의4.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 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 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
 - 7의5.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・재검토 및 변경승인
 - 7의6.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 · 감독
 - 7의7.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
 - 7의8.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
 - 8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·충당 및 공탁
 - 8의2.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·운송·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
 - 8의3. 삭제 <2018. 4. 30.>
 - 9. 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
 - 10.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・재검정 및 재확인. 다만,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.
 - 11.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
 - 12.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· 자료제출명령
 - 13.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·조사
 - 14.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
 - 15.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
 - 15의2.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(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)
 - 16.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
 - 17.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 - ② 삭제 <2010. 11. 24.>

제2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8. 4. 30.>

[전문개정 2011. 4. 4.]

부칙 <제34988호, 2024. 11. 12.> (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**제1조**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